

사천시관광종합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02. 7. 18
- 나. 제출자 : 사천시장
- 다. 회부일자 : 2002. 7. 18(의안 제 30호)
- 라. 심사일자 : 제6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(2002. 7.24)

2. 제안이유

- 대방 ~ 창선간 연륙교 건설과 대진고속도로 개통으로 관광객이 급증하는 등 우리시의 관광환경이 급변하고 있어, 관광기반시설의 확충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으므로 관광종합 지원시설 부지안에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며,
- 또한, 관광종합 지원시설 설치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시설물을 민자유치에 의해 설치하고, 기부채납토록 하여 민간 참여에 의한 원활한 사업 추진과 관광산업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골자

- 가. 관광종합지원시설의 위치 및 규모(안 제3조)
- 나.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자유치 기부채납 설치(안 제4조)
- 다. 관광종합지원시설물의 위탁운영 및 사용허가(안 제6조)
- 라. 사용료에 관한 규정(안 제7조)

4. 검토보고

- 가. 동 조례안은 대방동에 위치하는 관광종합지원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
- 나. 제4조에 규정한 민자유치사업은 시 재정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 기부채납토록 하여 시설 설치토록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며
- 다. 제 7조의 사용료 규정을 보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사용료는 당해

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의거,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의 일반 사용요율인 1천분의 50과 형평을 맞춘 것으로 보이며,

라. 주차시설 사용료를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한 것은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 및 관광 기여도를 감안하여 다른 시설과는 별도로 특별히 요율을 정한 것으로 보임.

마. 입법예고등 절차적 규정을 거쳤고, 상위 법령과의 저촉되는 부분이 없으며, 다른 조례와의 조화성도 구비하였다고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 요지

질 의	답 변
주차시설을 무료로 개방하지 않고 굳이 사용료를 1000분의 10으로 한 이유는?	지방재정법 관련 규정에 저촉되므로 곤란함.

6. 토론요지 : 없음.

7. 심사결과 : 수정의결

8. 수정안

조 례 안	수 정 안
제7조(사용료)①(생략) ②.....다만,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주차시설의 <u>위탁 운영시</u> 에는 1,000분의 10을 하한으로 한다.	제7조(사용료)①(생략) ②.....다만,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주차시설은 <u>이를 이용자</u> 에게 무료로 개방한다.
제12조(준용) 이 조례에서 <u>지방재정법,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사천시주차장조례</u> 를 준용한다.	제12조(준용) 이 조례에서 <u>지방재정법 및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</u> 를 준용한다.